

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-28호

「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8월 11일

강릉시의회의장

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

- 해변 및 관광지 주변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·숙박 금지를 규정하고, 공영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시 경고스티커 부착 및 강제 이동 조치를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주차 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담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공영주차장 사용제한 조치 항목 및 내용 추가(안 제4조제1항)
 -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사용제한 조치 항목 및 내용 추가
- 나. 차량 이동조치 시 「도로교통법」 제35조 및 제 36조 준용 내용 추가(안 제4조제2항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/☎033-640-4034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 의견

[의견제출]

- 우 편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
- 이메일: gimyoun17@korea.kr
- 팩 스: 033-640-4070

- 붙임 1.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. 끝.

[붙임 1]

강릉시 조례 제 호

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공영주차장 관리자는”을 “시장은”으로, “경우”를 “경우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거나,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이동조치 등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「도로교통법」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공영주차장 사용제한 등) <u>공영주차장 관리자는</u>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경우</u> 사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4조(공영주차장 사용제한 등)</p> <p>① <u>시장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경우</u> <u>경고스티커를 부착하거나,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이동조치 등의</u> 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「도로교통법」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.</u></p>

[붙임 2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□ 법 규 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제·개정안 내용	의 건	비 고